

폭염대비 근로시간 조정 합의서

사용자 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과 공원운영과 평화의공원 소속 현장근로자는 폭염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방지 등을 위해 건강근로기준법 59조 및 서울특별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17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것에 대해 합의한다.

- 다 음 -

1. 기 간: 2018. 8. 1.~8. 31.(1개월)

※ 기상상황에 따라 단축 등 운영기간 조정 가능

2. 조정 근로시간: 08:00~17:00

3. 적용대상: 공원운영과 평화의공원 소속 현장근로자(공무직, 기간제)

[근로자 동의서]

연번	성 명	동의여부	날인 (서명)	연번	성 명	동의여부	날인 (서명)
1	이길	동의		12	한보영	동의	
2	황기소	"		13	강부진	동의	
3	유양욱	"		14	허수연	"	
4	김리향	동의		15	이영래	"	
5	윤성성	"		16	정유나	"	
6	박보영	"		17	권현우	"	
7	기아영	"		18	김장도	"	
8	이영환	"		19	조가을	"	
9	김광권	"		20	정우준	"	
10	백소현	"		21	김관남	"	
11	박순미	"		22	정은지	"	

2018년 7월 30일

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